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포함〉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94호)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84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 수립 (김종민의원안)	4
2.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포함 (이종배의원안)	8

I . 제 안 경 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4)】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7.
3. 회부연월일 : 2024. 12.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4)】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8.
3. 회부연월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4)】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4)】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

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 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 수렴 (김종민의원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두려는 것임(김종민의원안 제25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u>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 ----- ----- <u>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u> ----- ----- ----- ----- ----- ----- ----- ----- -----

현행	개정안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⑨ (생략)	----- ----- ----- -----. ③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2년마다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② 공청회를 거친 후, ③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④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발전설비·송전설비·변전설비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필요한 전원설비의 장기적인 확충 및 운영에 관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임.

현재 기본계획에 지역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공식적인 절차가 이해관계자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뿐인데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되는 전원설비는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쳐 설비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나 지역 전체 관점에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절차를 추가하여 지자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전원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지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견 개진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공청회나 기본계획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¹⁾에서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1. 정책계획

자. 에너지 개발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

청취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거쳐야 할 법률상 절차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본계획의 적기 수립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포함(이종배의원안)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칠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이종배의원안 제25조 제6항제5호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략)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의2. (생략) <u><신설></u> 6. (생략) ⑦ ~ ⑨ (생략)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5의2. (현행과 같음) <u>5의3.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u> 6.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5조제6항의 각호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및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 및 주요 송·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²⁾하고 있음.

2)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한 상황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이 대기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중장기 전력 수급 및 발전 설비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임.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 1월 12일 확정·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2018년 전환부문 배출실적 대비 44.4% 감축) 달성을 위한 원전·신재생·확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석탄발전 축소 등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전망, 연도별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SO_x, NO_x, 먼지총량) 배출전망(2021년 1.4만톤 대비 2030년 53% 감축) 등 ‘환경 개선효과’가 주요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도별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배출전망(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단위 : 만톤)

구분	2021년(실적)	2030년	2036년
미세먼지(PM 2.5)	1.4	0.7	0.5
SOx	2.7	1.2	0.8
NOx	4.5	2.4	1.8
먼지총량	0.20	0.08	0.0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향후 대기환경 전망이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대기환경에 대한 사전영향을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 측면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견제³⁾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라는 기본계획의 본래 취지와 연관성이 낮은 대기환경 관련 사안을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3)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실시된 11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등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전기본의 대기환경 영향 등의 검토를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문 의 처
02)6788-5458